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광 수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전반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특별 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이전보다 3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재단은 사업자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 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용보증의 대상을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상환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폐업 소상공인 등을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